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8
----------	-----

제출년월일 : 2005. 4. 11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지방세법」의 개정(2005.1.5)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정비함(안 제3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 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원가산정방식에서 시가산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21조)
- 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18조, 안 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3조제1항 및 동조제3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 2005. 3. 11 ~ 3. 3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종합토지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를 “영 제11조”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8.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18조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을 “그 사업에”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

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비과세건축물”을 “비과세 토지·건축물·주택”으로 하고, “과세건축물”을 “과세 토지·건축물·주택”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6호 “건축물”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절 “종합토지세”를 삭제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로 한다.

제6조의2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우편법시행규칙”을 “「우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5조의2중 “시설대여업법”을 “「시설대여업법」”으로, “부산광역시세조례”를 “「부산광역시세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u>지방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1. 세무공무원 : <u>구청장</u>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 ----- <u>「지방세법」</u> ----- ----- 1. ----- : <u>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u> <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2. (현행과 같음)</p>
<p>제3조(세목) ① (생략) ②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종합토지세 ③ (생략)</p>	<p>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천재 등의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u>지방세법시행령</u> (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p>	<p>제7조(천재 등의 기한의 연장) ①----- -----영 제11조----- ----- ----- ----- ----- ----- ----- ----- ----- ----- ----- ②~⑤ (현행과 같음)</p>
<p>제17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 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삭제 95.3.14> 6. ~ 7. <신설></p>	<p>제17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 186조-----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u> 6. ~ 7. (현행과 같음) 8. <u>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u></p>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8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6조-----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u>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u>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 그 ----- ----- 사업에-----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u>재산가액으로 한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제21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2조(중과대상지역) ①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p>	<p>제22조(중과대상지역) ①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 ----- -----.</p>
<p>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물</u>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u>건축물</u>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u>비과세건축물</u>이 <u>과세건축물</u>로 된 때 4. <u>과세건축물</u>이 <u>비과세건축물</u>로 된 때 5. <u>건축물</u>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변경한 때 6. <u>건축물</u>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p><신 설></p> <p>② (생략)</p>	<p>제23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물 및 주택</u>----- 2. <u>건축물 및 주택</u>----- ----- 3. <u>비과세 토지·건축물·주택</u>-- <u>과세 토지·건축물·주택</u>으로 ----- 4. <u>과세 토지·건축물·주택</u>-- <u>비과세 토지·건축물·주택</u>으로----- 5. <u>건축물 및 주택</u>----- ----- 6. <u>토지, 건축물 및 주택</u>----- ----- 7. <u>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u> <p>② (현행과 같음)</p>
<p>제 3 절 종합토지세</p>	<p><삭 제></p>

현 행	개정안
<p><u>제28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u></p> <p><u>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u> <u>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u> <u>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u> <u>4.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u> <p><u>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u></p>	<p><삭 제></p>
<p><u>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u> ①<u>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u> <u>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 된 때</u> <u>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u> <p>②<u>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 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삭 제></p>